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항 및 동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능한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01일

홍 천 국 토 관 리 사 무 소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대상 : 공고 대상자 목록 참조
4. 공고기간 : 2023년 06월 01일 ~ 2023년 06월 16일까지(15일간)

5. 공고내용 :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곤란하여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033-430-9127)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전화 :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과태료 담당(TEL : 033-430-9127)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32 (Fax : 033-434-9995)
- 위반차량 내용 확인 사이트 : <http://www.roadfine.go.kr>

과적(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송달불능사유	과태료 금액	발송 주소지
1	문경구	69.07.13	충북06로 6288	보관기간경과	800,000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광장로14번길 23, 801동 202호(십정동, 동민탑아파트)
2	방규태	89.01.03	충남90사 3085	주소불명	240,000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3길 101, 401호(고덕동)
3	김영규	74.09.25	경기94사 5972	폐문부재	400,000	경기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475번길 53-11, 105동 206호(현대아파트)
4	이동훈	71.05.26	84나2535	보관기간경과	240,000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금장3길 12-6, 201호

홍천국토관리사무소장

